

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생 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~2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트러스트 킥스칸 플러스알파 증권 자 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)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.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. 환매조건부 매수 2~11. (생 략) <신 설>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u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</u> <u>가.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</u> <u>나. 환매조건부 매수 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</u> 2~11. (현행과 같음) 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